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금 융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전단 중 “10명”을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0명”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을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검사과를 둔다.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④ 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정책의
기획·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⑥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⑦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기 위
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
3년 9월 0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69”를 “71”로 하고, 일반직 계 “61”을 “63”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0”을 “62”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u>10명</u> (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국세청,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 ----- -----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0명----- ----- ----- ----- ----- ----- ----- ----- -----.
<u><신 설></u>	<u>제23조의2 (제도운영기획관 등)</u>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을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검사과를 둔다.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④ 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정책의 기획·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

제24조(한시정원) (생략) <u><신설></u>	<u>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u> <u>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u> <u>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u> <u>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u> <u>관한 사항</u> <u>⑥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u> <u>⑦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제24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 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0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u>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9</u>	<u>71</u>	+2
일반직 계	<u>61</u>	<u>63</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0</u>	<u>62</u>	+2
.	.	.	
.	.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6항 관련)

1. 금융혁신기획단(존속기한: 2023년 7월 31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9

2.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3년 10월 15일)

총계	7
일반직 계	7
4급 이하	7

3. 제도운영기획관(존속기한: 2023년 9월 0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4. 가상자산검사과(존속기한: 2023년 9월 00일)

총계	9
일반직 계	9
4급 이하	9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1. 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총계	4
----	---

일반직 계	4
-------	---

4급 또는 5급 이하	4
-------------	---

2. 제2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00일)

총계	2
----	---

일반직 계	2
-------	---

5급 이하	2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2343